

「직원 향학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2. 12. 19. 개정 판 (시행 2023. 1. 1.) → 2025. 12. 15. 개정 판 (시행 2026. 1. 1.)

바뀜 1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168/compare?from=1402&to=1715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전 8:58:28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원 금액) ① 직원이 본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입 등록금(입학금 포함)의 50%를 지원한다. 단, 타 대학의 경우 본교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과에 한한다. ② 박사과정은 자비 향학을 원칙으로 하되, 교육학(교육평가, 교육공학), 행정학, 경영학 등 학교업무와의 연관성,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위 과정에 한하여 50%를 지원할 수 있다. ③ 지원여부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결의한다. <신설 2022-12-19> [전면규정: 2022.12.19.]	제4조(지원 금액) ① 직원이 본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입 등록금(입학금 포함)의 50%를 지원한다. 단, 타 대학의 경우 본교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과에 한한다. ② 박사과정은 자비 향학을 원칙으로 하되, 교육학(교육평가, 교육공학), 행정학, 경영학 등 학교업무와의 연관성,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위 과정에 한하여 50%를 지원할 수 있다. ③ 지원여부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결의한다. <신설 2022-12-19> ④ <u>직원 향학 지원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중 1회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. <신설 2025-12-15></u> [전면규정: 2022.12.19.]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직원 향학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4조(지원 금액) ① 직원이 본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입 등록금(입학금 포함)의 50%를 지원한다. 단, 타 대학의 경우 본교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과에 한한다.
- ② 박사과정은 자비 향학을 원칙으로 하되, 교육학(교육평가, 교육공학), 행정학, 경영학 등 학교업무와의 연관성,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위 과정에 한하여 50%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지원여부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결의한다.
- ④ 직원 향학 지원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중 1회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[전면규정: 2022.12.19.]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